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월간 뉴스레터

2016년 4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회사
- 2015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
검항목 사전예고(금융감독원,
2016.2.26)

세무정보

- 2015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
고·납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웍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 06179)

QRM 본부
02 - 2009 - 5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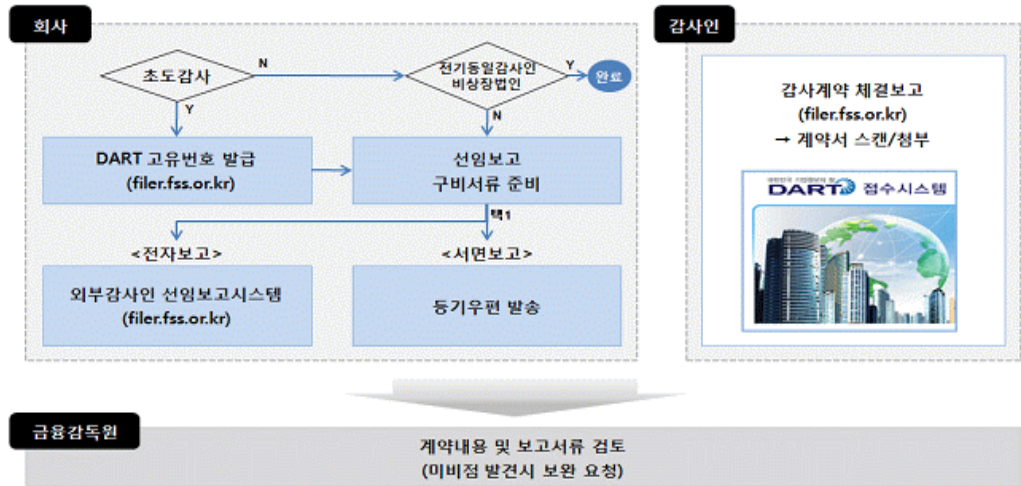
회계소식 등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절차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 감사인 선임 보고절차



- 보고기한: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후 2주0일** 이내
- 보고대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임보고 하여야 함
 -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로부터 지정 받은 경우
 -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 제출서류: 감사인 선임보고 공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① 감사계약서 사본
 - ②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 ④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전기 감사인과 당기 선임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초도감사법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제출방법: 전자보고 시스템(filer.fss.or.kr 로그인→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DART 접수시스템 상단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 버튼 클릭)) 또는 서면접수(우편발송)

(*) 전자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의

“외부감사인선임- 외부감사인선임절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초도감사회사의 경우 법인고유번호 발급후 감사인 선임보고 가능

* 문의전화: 제도관련(02- 3145- 7763, 7767),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사용법 관련(02- 3145- 5413), DART 법인고유번호 발급 관련(국번없이 1332 - (5번→ 4번))

2015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사전예고(금융감독원, 2016.2.26)

배경

■ **배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기업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 하도록 12월 결산법인의 2015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16.3.30.) 1개월 전 예고
- 이를 통해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사업보고서 정정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상

■ **대상**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359사에 대하여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

<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현황(잠정치) >

(단위: 사)

주권상장법인				기타(*1)	총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721	1,135	106	1,962	397	2,359

- 1) 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 법인,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 2) 재무사항 점검은 총 2,183사를 대상으로 함(금융회사 및 외국기업 등은 제외)

**주요 점검항목-
재무사항 37개
항목**

■ **주요 점검항목- 재무사항 37개항목**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1개 항목)
요약재무정보 및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설정·재고자산 현황 등 21개

항목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주요 기재미흡 사항]

2015년 실시한 상장법인 등에 대한 신속점검 결과 기재미흡이 많이 발견된 항목은

- ① 요약별도재무정보에 투자주식 평가방법 미기재(61.3%), ②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본문 미기재(33.5%), ③ 재고자산 현황 기재미흡(15.8%) 순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구분	항목명
1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여부
2	요약연결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소수주주지분 공시여부
4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공시여부
5	요약연결재무제표에 연결주당순이익 기재여부
6	요약재무정보 공시여부
7	요약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8	요약연결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 순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9	요약재무정보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여부
10	요약재무정보에 주당순이익 기재 여부
11	연결재무제표 공시여부
12	연결재무제표 주석 공시여부
13	별도재무제표 공시여부
1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시여부
15	재무제표 주석 공시여부
16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7	재고자산 현황
18	포괄손익계산서 상 총기타포괄손익 공시 여부
19	기타포괄손익 성격별 분류 및 분류기준 공시 여부
20	기타포괄손익 성격별 분류 적정성
21	소규모기업(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해당여부

□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8개 항목)

기업의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회계감독업무에 참고

(점검내용) 감사의견, 감사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및 운영보고서 등 내부회계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8개 항목)]

구분	항목명
1	감사보수 기재여부
2	사업보고서 상 감사시간 기재여부
3	감사보고서 첨부 외부감사실시내용에 상 감사시간 기재여부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여부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여부
6	감사인명 기재여부
7	감사의견 기재여부
8	비감사용역보수 기재여부

□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8개 항목)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국내 및 해외 종속기업수 등 공시정보를 수집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8개 항목)]

구분	항목명
1	연결실체 포함 여부
2	지배기업 여부
3	최상위 지배기업 여부
4	최상위 지배기업 종목코드 및 기업명(최상위 지배기업이 아닌 경우)
5	종속기업수
6	국내 및 해외종속기업수
7	국내상장 종속기업수
8	최상위 지배기업 종목코드 및 기업명(지배기업이 아닌 경우)

비재무사항- 10

■ **비재무사항- 10개 항목**

개 항목

□ **미상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 현황**

자본인정사항(회계처리근거, 신용평가회사의 자본인정비율 등), 조기상환가능일, 발행금리 등 기재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
 채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제한 등 주요 투자자보호특약 내용과 그 이행현황 기재
- 사외이사 활동현황, 준법지원인 현황
 사외이사의 안건별 의결권 행사,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현황,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주요경력(2015.8. 서식 도입) 등
- 최대주주 변동현황
 변동내역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 관련 기재 등
- 임원 개인별 보수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항목별 구분, 각 항목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재 여부 등
- 합병 등 사후정보
 합병, 중요자산(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내역,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 기재
- 기업의 규모, 특성 항목 : 3개 항목
 대규모기업집단의 상장기업(*), 2015년 IPO기업(12월 결산 72개사[SPAC 제외]), 코넥스 상장기업(12월 결산 106개사)

(*)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5위(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상장사 63개사

(점검내용)그간의 점검 과정에서 기재미흡이 자주 발생한 사항(11개 항목) 위주로 비재무사항 전반을 점검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최근 이슈(7개 항목)]

구분	항목명
1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현황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
3	사외이사 활동현황

4	준법지원인 현황
5	최대주주 변동현황
6	임원 개인별 보수
7	합병 등 사후정보

[기업의 규모·특성(3개 항목)]

구분	항목명
1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5개 그룹의 상장사 기재 전반(*)
2	2015년 IPO기업 기재 전반(*)
3	코넥스 상장기업 기재 전반(*)

(*) ① 종류주식 등 발행내역, ②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③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법인 개요), ④ 최근 6개월간 주가·주식거래실적, ⑤ 임원 선·해임, ⑥ 이해관계자 거래내역, ⑦ 우발채무 등, ⑧ 직접금융 사용내역, ⑨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 ⑩ 비재무사항 연결기준 기재, ⑪ ('15년 IPO기업) IPO 증권신고서 심사당시 주요 정정사항의 사업보고서 반영 여부 등

세무지원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5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1. 신고 대상자

2015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주요내용

또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율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15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35%	14,900,000
150,000,000 초과	38%	19,400,000

주요내용

3. 종합소득 신고시 첨부서류
1) 소득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 소득세 감면 받는 때 : 소득구분계산서
- 총당금·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명세서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3)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복식부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4) 필요경비 명세서

- 소득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필요경비에 계상한 때 그 명세서

5) 영수증 수취명세서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
- 소규모사업자 제외
- 6)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장부가 없는 경우)
- 기준경비율 신고자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4.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